

# 코로나19와 관련한 인권운동진영의 접근과 대응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1.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에서도 지켜져야 할 인권의 가치

한국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자가 발생한 1월 20일로부터 딱 1년이 넘었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했듯이 세계적 대유행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않았고, 코로나19는 그저 중국에서 대유행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생각됐다. 이는 중국(아시아)에 대한 혐오로 이어졌다.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혐오를 부추기는 언론과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짚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팬데믹 사태에서 전염을 막겠다며 국가가 감염된 개인이 어디에 갔는지를 ‘나이와 성별’을 일일이 알리는 등의 동선공개로 개인의 사생활을 드러내면서 개인에 대한 비난과 차별이 극심해졌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질병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피해야 할 사람들로 취급받았다. 또한 무조건적인 격리로 인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애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다. 면회조차 허락되지 않는 임종과 장례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이러한 국가의 조치는 애도조차 허락하지 않는 잔인한 분위기를 초래했고 한 사람의 죽음은 숫자로만 표현되고 그의 죽음은 나의 안전(감염되지 않기 위해)을 위해 사물화되고 비인간적으로 취급했다. 어떤 마을에서는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을 장례를 치르러 고향에 가는 차량이 방문하는 것을 막기도 했다. 여기에 서울에서의 집회금지 조치 등으로 정권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했다. 자가격리를 어긴 사람들에게 벌금을 내리는 방향으로 행정명령을 처벌 위주로 바뀌었다. 이렇듯 정보인권, 사생활의 권리, 애도할 권리, 집회시위의 권리가 ‘감염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반면 청도대남병원과 여러 노인요양병원 등의 집단감염 사태에서 드러나듯,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들의 건강과 생명은 지켜지지 않았다. 심지어 예방적 코호트격리라는 이름으로 치료와 이동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교정시설에서의 집단감염과 노숙인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으로까지 확대됐지만 대처방안은 바뀌지 않았다. 여성들은 더 많은 가사노동과 해고에 시달려야 했고, 빈곤청소년은 굶주림과 학습권 박탈에 처했다.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져 생존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참을 보면서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 서로의 존엄과 평등을 지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보았다. 존엄과 평등은 서로가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기에 연대라는 가치도 중요한 시대다. 국가가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한없이 개인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었다. 한국적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나라들이 많았다. 외출금지를 어긴 사람들을 총으로 쏘는 나라도 있었으며,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봉쇄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세계적 현상은 상대적으로 한국의 방역조치는 인권적인 것으로 보이기 쉬웠고 감염규모가 적은 현실은 ‘K-방역’에 대한 정부의 자부심으로 굳혀졌다. 이러한 자부심은 시민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를 소홀히 하게 만들었다.

이에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에 모임 사람들이 인권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아래에 주요 가이드라인을 공유한다.

##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sup>1)</sup>

### 하나,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인권존중의 원칙

공중 보건 위기는 빠른 속도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위기가 가속화되고, 모두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위기는 모두에게 다가오지만, 특히, 불평등한 구조에 놓인 이들에게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위기 속에 다른 누군가의 존엄성이 훼손된다면 사람으로서의 공통의 지위를 갖는 우리 모두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의 위태로운 현재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존엄성에 기반하는 인권을 존중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은 위급한 순간만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 대한 진단, 대응, 평가 및 이후 전망을 그려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살펴야 한다. 코로나19는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고 미래이다. 과거의 불평등한 구조가 오늘을 만들었다면, 오늘을 겪어낸 우리는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인간 존엄성에 기반한 인권 존중으로써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 둘,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의 원칙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확인했다. 위험은 모두에게 동

---

1)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2020..6.23.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등하게 전가되지 않기, 방역과정과 예방정책, 지원정책을 평등의 원칙에 기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코로나19를 겪는 우리는 차별과 혐오가 방역과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타인을 혐오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할 수 있다. 재난과 위기에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할 수 있는 준비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차별금지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본래적인 평등이 존중되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취약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이해가 관련 대응에서 일차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취약한 필요에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의 필요가 충분히 존중하고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셋,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 의사결정의 원칙**

일방적인 통제와 강력한 행정지침은 오히려 공포와 불안감만을 조성할 뿐이다. 긴급한 시기일수록 시민들과 소통·참여하여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접근 가능한 형태로 그 위기의 성격과 정도, 잠재적 위험과 이를 피할 수 있는 조치, 지원조치 등과 자신의 해당 여부, 자신이 누리는 권리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와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 및 사회적 신뢰의 증진, 민주주의적 법치의 강화는 모든 이들의 의미 있는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궁극적으로 단순한 정보 제공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피해자 등이 대표되고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감염으로부터의 예방이 개인과 집단의 인권을 송두리째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근거가 될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나아가 근본적인 불평등 시정조치 없이 감염으로부터의 예방과 소수자가 생명과 존엄을 잃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

## **2. 인권단체들의 주요 대응 활동<sup>2)</sup>**

---

2) 필자가 주로 참여한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코로나19비정규직 긴급행동, 코로나19시민백서 팀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음을 밝힌다. 2020년 5월 6일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발족했으나 주로 토론회를 몇 차례 한 활동 외에 알기 어려웠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인권운동의 대응은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에서도 지켜져야 할 인권의 가치’는 무엇이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정부 등 국가기관에 제기하는 것이었다.

인권단체들이 주로 한 대응은 초기에 주로 혐오와 관련한 것이었다. 3월부터는 사회적으로 권리가 박탈되거나 주변으로 밀려난 사회적 소수자집단에게도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마스크 지급 등 적절한 방역수단의 조치가 주어졌는지, 위축된 생산과 유통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집단에 대한 지원제도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는지, 공중보건의 위기라는 이유로 개인의 존엄과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료에 대한 충분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문제제기하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여러 인권단체들, 시민단체들은 모여서 실태조사도 하고 요구안을 만들어 정부와 기업, 국회 등 여러 행위주체들을 만나 인권에 기반 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일이었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라는 연대체를 꾸려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고, 시민건강연구소를 비롯한 단체들은 실태조사를 통한 결과를 시민백서를 작성하여 알리는 작업을 했다. 코로나19비정규직 긴급행동을 꾸려 정부에 항의하는 직접행동을 하기도 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인권위에 ‘긴급탈시설’을 요청하며 진정을 하기도 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이나 장애인단체, 빈민단체 등 대부분의 소수자인권단체들은 당사자들을 만나고 긴급한 위험을 해소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했다. 그 외에도 쿠팡집단감염사태에서 드러나듯이 집단감염의 위험을 안고 사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여러 노동단체들이 결합하여 실태조사 및 피해지원을 했다.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대응을 의제별로 거칠게 분류해보면 혐오에 대한 대응, 방역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건강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업 및 정부의 조치에 대한 대응,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

## 1) 혐오와 차별

혐오와 차별은 초기에만 한정되지 집단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대상을 옮겨가며 이어졌다. 코로나19라는 낯선 전염병이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결합되면서 혐오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2월20일 첫 사망자가 나오고 팬데믹이 선포되면서 혐오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천지’라는 특정종교에 대한 혐오로 이어졌다. 대구시에 대한 차별과 낙인도 생겨났다. 이태원 발 집단감염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로 이어졌다. 특히 기지국 수사 등으로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않아 많은 성소수자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는 언론의 책임이 컸다. 언론보도에서 혐오를 부추기거나 낙인을 찍는 경

우가 많아 5월 11일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를 만들어 서울시를 만나 개선을 요구하였다.

대책기구는 지방정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 외에도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검진을 안내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을 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는 익명검사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 2) 정보인권

이태원발 집단감염으로 드러난 혐오가 동선이동 및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에 이에 대한 지자체의 가이드라인 개선으로 이어졌다. 서울시의 인권옹호관 등과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정보인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동선공개 원칙을 만들었다. 중대본도 동선공개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

## 3) 집회시위 자유

지자체의 고시 하나로 작동하는 기본권 제한이 심각하다. 정부의 집회시위의 권리는 감염병예방법 49조1항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종교행사 등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집회는 지자체장이 금지 통보하는 고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행정 권력이 바로 작동된다.

서울시는 가장 먼저 집회금지를 고시한 지자체이다. 심지어 코로나19가 경계 단계였던 2월 21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광장 및 주변 차도와 인도 등 서울시내 주요 지역에 집회 전면금지를 고시했다. 2월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았던 단계에서도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광화문광장에 있던 소위 태극기부대라 불리는 극우단체들과 문중원 열사 추모천막을 강제철거하였다.

집회를 금지한 시기나 장소를 보면 집회금지 고시가 감염병 예방보다는 정치적 반대 세력들의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 당시는 감염병 확산이 심각단계가 아니었고, 당시 문재인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을 규탄하는 극우세력이 태극기부대가 서울 도심에서 주로 집회를 장기간 해왔기 때문이다. 그 후 심각단계로 격상되는 2월 26일 0시부터 기존 서울광장·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으로 국한했던 도심 내 집회 제한대상 장소를 확대했다. 2월 26일에는 대구시도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지역이 아닌 도심지역을 기한 없이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변화가 없다. 정부 주요기관이 있는 강북 도심에서 집회금지가 된 것과 달리, 강남지역에서는 집회 금지구역이 없다. 삼성해고자가 삼성본사 앞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그 근처에서 집회를 수차례 했다. 장애인들이나 노동자들도 강남과 잠실, 반포 일대에서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였다. 이는 집회금지 대상 선정 기준의 자의성만이 문제가 아니다. 집회금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삼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제시한 내용인 시민사회의 참여가 집회금지 구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없었다. 집회 금지의 기준도 없었다. 집회금지는 집회 규모나 방역조치 의무 위반 등의 경우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전면금지 방식이었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 기본권 최소침해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시내 가 서울의 타 지역에 비해 감염가능성이 더 많다는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조치, 자의적인 조치로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는 집회에 대한 전면 금지보다는 기준을 정해서 제한하는 외국의 방식과 확연히 다르다. 지자체의 집회금지구역 선정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특히 서울에서는 서울시가 고시한 집회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집회를 하거나 집회신고를 했음에도 강제철거하거나 금지통보를 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의 공백을 근거로 한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간의 제한 없는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어긴 경우 참가자 전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집회 그 자체를 범죄화하고 있다. 집회금지 및 제한의 경우에도 사전적, 사후적 감독기구가 부재하다. 따라서 법개정을 통해 자의적 집회 금지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차량행진이나 1인 시위 등 창발적인 대응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마저도 금지하여 비판을 받았다.

#### 4) 장애인시설 집단감염

장애인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은 시간이 흐른다고 나아지지 않는다. 시설이라는 형식, 비위생적이고 물리적 간격을 둘 수 없는 집단 수용, 기본적 인권이 제한되어있는 상황은 장애인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호트 격리(동일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졌다. 거주인 56명, 종사자 20명 총 7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11일 집단감염 긴급조치로 신아원 거주인 전원에게 대해 '긴급분산조치'를 이행했으나 3일 만에 거주인에게 대한 재입소를 추진했고, 현재 58명이 재입소한 상황이다. 즉 시설유지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시설장애인들의 인권은 보호될 수 없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광화문과 신아원 건물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했다.

재가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굶어죽거나 감염돼 죽을 수밖에 없다. 대구시에 집단감염이 일어났을 때도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개별적으로 해결하거나 장애인권활동가들이 나서서 활동지원을 하는 참담한 일이 이어졌다.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는 농성 외에도 인권위 진정과 서울시 면담, 복지부 면담을 통해 상황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 5) 쿠팡 등 비정규직 집단감염 및 과로사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 집단감염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었다. 그 결과 곳곳의 물류센터에서 집단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인천 물류센터 노동자의 사망, 철곡 물류센터 청년노동자 사망, 목천물류센터 조리노동자의 사망, 마장센터 하청노동자 사망, 동단 물류센터 여성노동자 사망이 이를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집단감염 이후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충실하지 않아 노동자와 노동자의 가족을 두 번 피해를 보게 하고 있다.

이에 인권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은 구광피해자지원대책위를 꾸려 실태조사를 하고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를 통해 기업을 만나고 교섭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노동자들의 피해는 구제되고 있지 않다.

## 6) 의료공백

대구 정유업 사건에서 보이듯 공공의료의 부재는 코로나19의 감염 외에 다른 병을 갖고 있거나 아픈 사람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었다. 심지어 초기에는 코로나가 아니면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죽음에 이르는 상황도 있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공공병원에서 이주노동자 치료가 가능했으나 코로나로 병원의 주역할이 바뀌면서 접근할 수 있는 병원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한 HIV/AIDS 감염인의 경우 편견과 불안이 더 심해져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여러 병원을 전전공공해야 했다. 의료공백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상황을 막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의료공백팀을 만들어 사례를 조사하고 토론회를 통해 사회화하고자 노력했다. 그 외에도 이와 관련 정당과 만나 의견개진을 꾸준히 이어갔다.

## 7) 감염병예방법 개정

감염병예방법이 소수자를 위한 조치는 공백이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현행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크게는 국가권력이 감염병이라는 재난시기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것을 명시하는 것<sup>3)</sup>과 권리의 제한의 정당성 보장에 있어 국제인권기준이 규정하는 합법성, 비례성, 차별금지 등의 제원<sup>4)</sup>칙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차별처럼 사회적 소수자집단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에 반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 감염병예방TF를 구성해 작년 7월에 국회의원실과 토론회를 했다. 특별히 개정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 개정을 위한 작업을 2021년에 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올라온 안들은 지원에 대한 것과 개인의 인권을 제한하는 안이 주로 나와있어 대안적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

---

3) 시민들의 생계 곤란, 고용 상실, 미흡한 의료접근권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생활영역) 등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위한 국가의 역할. 무분별한 집회의 금지, 격리 조치, 사생활의 영역 침해 등 광범위한 권리의 침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율하는 법적장치가 부재하거나 불충분하게 규정

4) 안심밴드처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임에도 개인의 동의여부를 묻는 것은 형식적임.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동의에 기한 행위라고도 보기 어려움



## 8) 백신

백신 접종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이나 차별 없는 보편적 접종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아 이와 관련해 ‘백신인권팀’을 구성해 성명을 발표하고 중대본에 전달하였다. 또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백신을 둘러싼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공론화 하기 위해 집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그 외에도 장애인돌봄, 아동돌봄 등 청소년인권문제, 여성인권문제 등을 여성, 청소년단체 등이 대응해가고 있다. 홈리스나 이주노동자 차별 문제등도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 3. 대응에 대한 단상

국가기관의 대응은 행정편의주의와 무능, 통제로 일관했다. 공중보건위기에서 가장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공공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집단도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은 거꾸로 갔다. 장애인이나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다 문을 닫고 그래서 이들을 설 곳도 도움을 받을 곳도 없이 철저히 고립된 채 생존의 위험을 견뎌야 했다. 코로나19시기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강조됐으나 이것은 병상확보나 백신확보가 축소되어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시민사회의 대응은 공론화를 통한 국가기관과 기업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고 사회적 소수자집단이 차별받는 현실을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만나 개선을 위한 의견 개진을 했다.

서울시나 경기도 등의 일부 지자체들은 시민사회와 만나 인권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협력하려는 자세를 조금 보인 곳이 있었다. 앞서 서술한 동선 공개 등 정보인권가이드라인을 세우려 했다. 반면 중앙정부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으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중대본에 면담요청 등을 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둘째 집회 등을 통해 직접 항의의 의사를 대중적으로 표출하는 것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긴급행동을 꾸려 두차례에 걸쳐 긴급 대중행동을 전개하며 정부 정책이 노동자보다 기업퍼주기로 일관하고 있음에 대해 알렸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들처럼 제도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집단은 고용보험의 보호조치 받고 있지 못한 현실을 공론화 했다.

국가기관 중 가장 많은 역할을 했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오히려 인권이 침해받는 위기의 상황에서 존재감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진정을 몇차례 했으나 아직까지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교도소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었다. 단지 정신병원 입원절차 강화, 코호트격리나 혐오, 동선공개, 교정시설집단감염 등에 대한 성명정도만을 했을 뿐이다. 실태조사나 정부의 과잉조치에 대한 진정결과도 입장표명도 없었다.

#### 이후 과제

시민사회의 역량이나 지자체의 인식에 따라 조치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지방정부별로 대응은 차이가 나는 만큼 모든 지역에서 차별없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부재는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들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나 감수성도 인권침해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생활 등 정보인권,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를 당연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계획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바뀌지 않는 것은 기업의 조치 부재다. 감염병 위기 시기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기업의 규모나 노조의 유무에 따라 시민들의 피해정도가 차이가 나는 불균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책무를 강조해야 한다.

####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공동으로 방향을 모색하자는 제안 속에서, 2020년 4월 구성되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이 참여했으며, 2021년에 시민건강연구소가 추가로 참여하였다.

현재는 월1회 전체회의를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대응팀을 구성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TF>, <의료공백팀>, <백신인권팀>을 구성해 다른 인권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다.